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우리시 맑은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신고대상시설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적정 수거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 방류하고 있으나,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은 사료작물 재배시비 외에는 사용처가 없고 대부분 비가림 시설이 없는 축사운동장이나 한모퉁이에 그대로 적치 보관하여 우기시 또는 여름철 수질오염 및 악취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축분에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처리 함으로써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은 물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 자체전력으로 사용하고 최종 처리되는 부산물에 대하여는 퇴비로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금년말 준공예정에 있음.
- 축분혼합처리시설은 국내 최초의 시설이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서 운전초기부터 효율적인 설비가동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 유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획을 추진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의 범위를 축분혼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함.
-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기타자료(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안)

1. 시설현황

- 위 치 :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39-4번지 일원
- 처리용량 : 80톤/일(음식물쓰레기 20톤 + 축분 60톤)
- 처리방법 : 중온혐기성소화
 - 공 장 동 : 지하1층, 지상2층(건축면적 : 1,775㎡)
 - 가스저장동 : 건축면적 222.59㎡
- 사 업 비 : 9,090백만원(양여금 7200, 도비 900, 시비 990)
- 사업기간 : '01. 5. 9 ~ '02. 12. 27

2. 민간위탁 추진 원칙

- 운영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 위탁관리
- 시공중인 시설은 준공시점에 맞추어 위탁관리
- 신규수요와 관련 위탁사무는 가능한 한 Turnkey방식에 의한 위탁
 - 설계, 시공, 운영관리를 처음부터 일괄입찰 방식

3. 위탁사무의 범위

-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4. 위탁기관

- 3년으로 하되 연장가능

5. 수탁가능 업체

- 관련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관리·운영의 위탁)

- 수탁대상자

-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
- 수질환경법에 의해 등록한 방지사설업자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수탁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

- 수탁업체의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7. 민간위탁 방법

-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8. 시직영시 문제점과 민간위탁 필요성

-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파주시가 인수받아 정상운전을 시작하여야 하나, 직영관리시 현재 혐기성시설에 대한 전문기술 및 인력이 없음.
- 직원의 순환보직등 잦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술축적이 미흡하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할 뿐만아니라,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기피 현상이 발생해 업무의욕 저하
- 운영관리 인력구조의 비효율적인 구성 즉 실제운전 요원보다 행정요원이 많아 이에 따른 인건비 과다지출로 경영혁신등을 통한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수한 전문지식 경험 및 기술을 요하는 수처리분야로 비전문성 공무원이 감독 및 운전할 경우 효율저하와 운영관리 전문인력 부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설비의 정상가동 및 유지관리가 어려움.
- 운전초기부터 효율적인 설비가동시스템의 정착이 어렵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전에 어려움 봉착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9. 민간위탁의 효과

○ 시제정 부담 완화

- 축분혼합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를 시에서 민간으로 전환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시의 운영비 지원부담이 크게 완화됨.
- ※ 행자부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하면 운영수준 20~30%절감이 분석됨.

○ 운영관리 요원의 증원 소요 감축효과

- 위탁운영·관리시 운영관리 분야에서 인력감축 등 자발적인 경영 효율성 노력이 강화됨.

○ 환경개선효과 기대

- 시는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도·감독자로 전환, 시설의 정상운영과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경쟁력확보 및 기술개발촉진

- 기술 및 경험축적이 풍부한 전문수탁 기관 및 민간회사가 운영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지속적인 개발적용에 따른 운영효율 개선
- 공정특성에 적합한 운전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내구연수 연장

○ 시설관리상 책임소재 명확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민간위탁동의안건은 파주시의 친환경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중 파주읍 봉암리 1039-4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사업”이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이는 동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5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할 능력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아울러 위탁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그 법령적합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3조(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환경부, 시행일 2003.1.1]

제5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糞尿處理施設·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 및 公衆化粧室의 효율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理·운영을 管理·운영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3.12.27, 1997.3.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

제111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8.9>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본금 또는 재산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가. 자본금 또는 재산

- (1) 법인인 경우 : 자본금 2억5천만원이상
- (2) 개인인 경우 : 재산평가액 5억원이상

나. 기술능력

- (1) 수질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1인이상
- (2) 화공기사(화공·공업화학분야) 1인이상
- (3) 기계기사(일반·정밀·건설·공정설계분야) 1인이상
- (4) 전기기사 1인이상

3.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방지시설업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나. 내용 타당성

- 금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의 양이 많아 농가에서 사료작물등의 시비로 이용하고 남은 잉여량을 전량 수거하여 음식물쓰레기와 혼합가공 처리하여 부산물은 퇴비를 생산해 농가로 환원시키는 친환경설비로서 그동안 남은 축분의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한 자체전력 활용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함.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건립개요

- 위 치 : 파주읍 봉암리 1039-4번지 일원(기존 위생처리장 부지내)
- 사업규모 : 1일 80톤처리(축분60톤, 음식물쓰레기20톤)
- 사업기간 : '98 - '02. 12월
- 사 업 비 : 90억 9천만원(국비 72억원, 도비 9억원, 시비 9억9천만원)

- 집행부에서는 본 동의안건이 의결되면 관계법령과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수탁기관 선정시는 동 시설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설비이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과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대상자 규정내용에 따라 운영관리 능력이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둘째, 동 시설은 외국설비와 자재를 다수 이용해 시설된 만큼 일정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기술교육과 적정의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체결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셋째, 현재 위탁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적의 소요비용으로 설비가동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수탁기관의 선정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9인 이내로 별도 구성 운영하는데, 동 위원회에 의원 2인이상을 포함 구성토록 되어있음으로 향후 동 위원회에 위촉되는 의원께서는 동 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